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근거 신설〉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7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근거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

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부가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3조 및 제4조제3항제5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¹⁾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연구개발 활동 및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u>보건의료기술</u>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생략) ④ ~ ⑥ (생략) <u><신설></u>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u> -----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정부는 그간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학과 이공계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과학자(MD-PhD)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사업을 편성·추진하여왔음.

- 참고로, 2026년도 예산에는 학부-전공의-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의 융합형 의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본인의 임상과목 외의 자연과학·공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인 연구자(업무시간의 최소 30%를 연구활동에 할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R&D)’, 의과대학과 이공계대학원 간 공동교육 및 융합연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K-MediST 지원사업(R&D)’ 및 의사과학자의 해외 연구기관 방문연수 등을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등 4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과학자 관련 예산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2결산	'23결산	'24결산	'25예산	'26예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9,006	10,679	8,390	9,890	8,875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4,815	13,210	41,183	76,800	101,384
K-MediST 지원(R&D)	-	-	-	-	7,800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	-	-	-	9,60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준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사과학자가 업무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연구활동에 할애하는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의 인건비를 국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에서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진료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구시간을 확보하면서 진료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연구개발비로 보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현행법 제2조의2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³⁾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마다 서로 달랐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⁴⁾ 2020년 6월 법률 제17343호로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⁵⁾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이 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2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상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한 유형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제4조제3항제5호⁶⁾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가 2023년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에도 ‘바이오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의사과학자 양성'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의사과학자 관련 부분(발체) >

14-2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의사과학자 양성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

- 의대-병원-학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공계 전공과 의학 지식, 임상수련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학부) 이공계 전공과 의학 지식 간 융합교육 및 연구기반 마련
 - (전공의) 임상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연구방법 교육 및 연구 참여 기회 제공
 - (박사과정)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다양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 학교·병원의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병원 내 연구 인프라 조성, 연구 전담교수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의사과학자 창업 인센티브 제공 등

☐ 의사과학자와 산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수요 대응력 강화 및 사업화 성과 활성화 지원

- 기업과 의사과학자를 연계하여 우수 인적 자원을 산업현장에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 의료현장 및 의료 산업체의 미충족 수요 파악·대응하며 핵심 분야의 주도적 인재 양성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대학병원 교수는 대부분 의과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사과학자의 병원 내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진료-연구 비중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병원 내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진료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구시간을 확보하면서 진료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연구개발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⁷⁾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법률에 그 적용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 연구행정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고,⁸⁾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타 분야 연구자와의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9년 10월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운영하였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의2는 삭제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통된 기준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대하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반도체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현행법과의 정합성도 낮으므로 안 제5조의2는 삭제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